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06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송언석·박준태·구자근

박수영ㆍ이종욱ㆍ이인선

정희용 · 강대식 · 임이자

최은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 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 등(이하 "수입배당금 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 기 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피출자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자법인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458조에 따라이익배당액의 일정 부분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해당이익준비금은 배당할 수 없으므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추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출자법인이 해당 이익준비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익금불산입 배제 조항에 따라 출자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이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이중과세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출자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출자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 중 "수입배당금액"을 "수입배당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이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재원(財源)으 로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 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액의 익금불산입) ① (생 략)	액의 익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2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			
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	3		
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			
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u>수입배당금액</u> <단서 신	<u>수입배당금액.</u> <u>다만,</u>		
<u>설></u>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31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법인이 「상법」 제458		
	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		
	을 재원(財源)으로 받은 수입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